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83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김영배 · 최혁진 · 장철민
송기현 · 손명수 · 임미애
민병덕 · 박균택 · 김태선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인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퍼센트, 지방선거의 경우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투표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며, 투표함 송

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관리
의 책임성 · 투명성 ·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 · 제10
항, 제169조 및 제170조제1항 ·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투표용지와 투표함의”를 “투표함의”로 한다.

⑨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100분의 70(지방선거의 경우 100분의 60) 기준으로 작성하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69조 중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를 “투표용지 보관 및 관리 상황, 투표상황,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포함하여 투표록을 작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구체적인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반할 수 있다”를 “동반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때 투표록을 전달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100분의 70(지방선거의 경우 100분의 60) 기준으로 작성하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u>
<u>⑨ 투표용지와 투표함의</u>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합·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u>⑩ 투표함의</u> ----- ----- ----- ----- ---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u>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u>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 ----- <u>투표용지 보관 및 관리상황, 투표상황, 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등을 포함하여 투표록을 작성하고,</u> ----- ----- <u>. 그 구체적인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第170條(投票函 등의 송부) ①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	第170條(投票函 등의 송부) ① -- ----- -----

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 호송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u>동반할 수 있다.</u>	----- ----- -----, 이때 <u>투표록을 전달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u> ② ----- ----- ----- ----- -----<u>동반하여야 한다.</u>
--	---